# 평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회부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4. 4. 4(금) 평창군수(환경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4. 4. 15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4. 4. 22(화) 제20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본회의 상정·의결

#### 2. 제안이유

○ 『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』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# 3. 주요골자

#### □목 적

○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어린이급식소에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있는 민간기관(법인)에 위탁하기 위함

#### □ 시설현황

O 시설위치 : 평창읍 관내에서 적의선정

O 조직인원 : 3명(센터장1, 팀원2)

O 개소예정일 : 2014. 6월중

O 사 업 비 : 58,340천원(국비29,170, 도비11,668, 군비17,502)

#### □ 위탁개요

O 위탁기관 : 강원도 소재 영양 관련학 개설대학, 법인 등

O 위탁기간: 2014. 6월 ~ 2016. 12월(3년간)

O 위탁내용 : 어린이 집단급식 시설등록 및 위생·영양지원

-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, 레시피 제공 및 조리실 위생·영양 컨설팅

- 어린이 급식소 시설장과 조리원 대상 영양·위생교육

- 위생·영양관리 및 학부모 대상 영양교육 실시 등

#### 4. 검토결과

○ 본 동의안은 『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』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『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』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위탁하기 위 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

『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』제34조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 집은 보육 정보센터, 보건소 및 급식관리지원 센터 등에서 근무하는

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토록 되어 있음.

위탁내용을 보면 어린이 집단급식 시설등록 및 위생·영양지원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, 레시피 제공 및 조리실위생·영양 컨설팅, 어린이 급식소 시설장과 조리원 대상영양·위생교육, 위생·영양관리 및 학부모 대상 영양교육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.

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탁시 관외 자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관내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창출에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